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109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1. 3. 25.

판결 선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7. 23. 접수 제36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7. 4. 2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27.7%,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5. 20. C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7. 15.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5. 13.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원금 2,480,496원, 인수 전 이자 296,000원, 인수 후 이자 779,276원으로 합계 3,555,772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8. 1. 5.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F, G, H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피고와 C, F, G, H는 2018. 1.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7. 23. 접수 제36775호로 2018.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8. 1. 5.경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협의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C가 채권자인 소외 회사나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위 C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카드 및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C의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정호

별지